

경주시 공고 제2012-11-05호

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

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11월 5일

경 주 시 장

1. 낚시 금지지역 지정이유

- 형상강 월령보 주변 꼭 필요한 구간에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친수기능을 제공하고 하천시설물의 보호하기 위함.
- 형산강내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, 떡밥·어분 등 미끼사용으로 인한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함
- 금장대 주변 천년습지인 수변공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용자들 경관과 친수 기능 제공

2. 주요내용

가. 낚시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

하천명	등급	위치	연장
형산강	국가하천	좌안 : 석장동 1211-1천 ~ 현곡 금장리 1271 우안 : 성건동 606 ~ 황성동 1053-1 (동대교 ~ 월령보 사이 형산강 양안)	수변 총 2,430m 좌안 : 860m 우안 : 1,150m 월령보 : 420m

나. 낚시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

- 낚시 금지기간 : 연중
- 행위제한 : 떡밥 ·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

3.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

- 가. 근거 :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자
- 나. 벌칙 : 하천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4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간 : 2012.11.5부터 2012. 11.25까지
- 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
- 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
연락전화번호,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라. 제출기관 : 경주시청 도시건설과 (☎ 054-779-6391 ~ 6)
 - 주소 : 경주시 동천동 800
 - 팩스 : 054)760-7416

5. 기타사항

- 가. 제출 기한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나. 공청회개회계획 : 없음

붙임 : 위치도 및 사진대지

위 치 도



사 진 대 지

